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56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56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86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 선고 2020. 4. 23.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86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10,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박상준

판사차윤제